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고 제2026 - 1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우며 학습뿐만 아니라 자립·고용·직업훈련 및 사회생활 등 생애 전반에 걸친 지원이 필요함. 이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개별 특성과 생애주기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안 제4조)

라. 경계선지능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규정 (안 제5조 ~ 제6조)

마.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 규정 (안 제7조)

바. 경계선지능인 자립훈련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규정
(안 제8조 ~ 제9조)

사. 경계선지능인 지원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규정
(안 제10조 ~ 제14조)

아. 교육·홍보, 공동사업 추진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
(안 제15조 ~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참조 : 의회사무국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5, 전화 : 02)3425-7388, FAX : 02)3425-7292, E-mail : tnk10@gangdo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